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취소 또는 원상회복 명령
1)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2) 1)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3) 1)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3.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공사중지 1개월
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	법 제34조제1항제4호	허가취소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다.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다목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5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효력정지 1개월 허가취소
--	---------------------	---